

#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 개 정 이 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래 되어 낡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원의 수를 하향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부분의 세대당 규모가 평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함(영 제32조제1항제1호).
- 나.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노후·불량 공동주택

을 재건축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함(영 제42조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9의3.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제2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2.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회보